

제3조(직급별 정원의규정) 군의 본청 · 소속기관 및 읍 · 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 【 4 】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제14480호로 '95년 1월 1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 되었기 때문임.

주요골자

- 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는 현 행의 규정을 →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 (안 제3조)

□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4480호)

제21조(정원의 규정)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중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를 “군수가 따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u>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u> 으로 정한다.</p>	<p>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 ----- ----- 교수가 따로 ----- -----</p>